

# 조 정 합 의 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2서울조정1572·1573(정정·반론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1. 보도문

가. 제 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차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나. 본 문 : 코메디닷컴은 지난 9월 26일 “주요간부 출사표... 보건연 무슨 일이” 제목의 보도에서 이선희 2대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취임한 후 주요보직자들이 회사를 그만둔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비위 간부 파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거부 등과 관련한 연구원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이 황 모 간부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회사를 그만둔 보직자 중 일부는 비위사실에 연루되어 불명에 퇴사했고, 나머지는 이직 등 개인희망에 따라 퇴직한 것일 뿐이며, 현재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결과는 내년 초 연구기획관리위원회 심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계약직은 공채를 통해 정규 채용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 (주)코리아 메디케어는 2012년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코메디닷컴 홈페이지 뉴스홈 기사목록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 (주)코리아 메디케어는 제2항과 같이 보도를 이행한 후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포털사에도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전송 조치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내용(제목, 본문,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들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보도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중면 교수 관련 보도 해명자료를 삭제한다.

6.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11. 12.

신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리인

권영조 권영조

이상만 이상만

피신청인 (주)코리아 메디케어

대리인

조현욱 조현욱

언론중재위원회 제4중재부

조사관

윤치경 윤치경

